

## 2 개정조문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78조의2(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) 법 제74조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1의2.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제1항에 따른 <u>출산전후휴가</u>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</p> <p>2. · 3. (생 략)</p>	<p>제78조의2(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의2. ----- ----- <u>출산전후휴가</u>(이하 이 조에서 “출산전후휴가”라 한다) -----</p> 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(이하 이 호에서 “수도권”이라 한다) 외의 지역(수도권 내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 감소지역을 포함한다)에 소재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. 다만, 해당 종업원의 월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, 최대 3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</p>
<신 설>	